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2025. 8.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사 우

목 차

I.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1
1. 세입 결산	1
2. 세출 결산	3
가. 총괄 내역	3
나. 이체·이용 및 이월 내역	7
다. 전용 내역	7
3.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 주요 검토내용	8
II.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별 검토	11
1. 세입	11
2. 세출(총괄)	13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내부통제기능 미흡	13
□ 사업수행방식 전환 효과에 대한 성과 분석 필요	18
3. 세출(사업별)	25
가.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1000-1031 단위사업)	25
1) 개 요	25
2) 세부사업별 검토	26
가) 자문회의 운영(1031-300 세부사업)	26
□ 국내지역회의 임차료 반복적 과소편성 및 초과집행 부적정	35
□ 당초 예산 미편성 물품 구입 최소화 필요	39
□ 간부 자문위원 활동지원비 예산과목 일치 필요	44
나.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1000-1032 단위사업)	47
다. 정보화사업 추진(1000-1033 단위사업)	48

라. 사무처 인건비(1100-1101 단위사업)	50
마. 기본경비(1100-1111 단위사업)	52
바.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00-1131 단위사업)	53
1) 개 요	53
2) 세부사업별 검토	54
가) 자문위원 역량강화(1131-300 세부사업)	54
□ 영상제작비 예산과목 혼용(210-01 ↔ 210-14) 집행 부적정	62
나) 지역협의회 운영(1131-301 세부사업)	65
다) 지역협의회 활동추진(1131-302 세부사업)	70
사. 시설관리(1100-1132 단위사업)	78
III.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79
1. 재정상태표	79
가. 자 산	80
나. 부 채	81
다. 순자산	81
2. 재정운영 분석	82
가. 프로그램순원가 및 관리운영비	83
나. 비배분비용	83
다. 비배분수익	84
라.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	84
3. 순자산변동 분석	85
가. 기초순자산	85
나. 재정운영결과	85
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	86
라. 조정항목	86
IV.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87

I.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4년도 세입예산액 500만원 중 1,9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700만원이 수납(예산액 대비 수납률 140.0%)되었음.

< 2024년도 세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세입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
5	19	7	-	12	2	14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4년도 세입예산의 주요 수납 내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 조직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운영비, 사업비)의 이자수입인 기타재산이자수입 500만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국가채권 세입 등의 기타경상이전수입 200만원 등임.

< 2024년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세입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일반회계	5	19	7	-	12	2
11관 재산수입	3	5	5	-	-	2
54항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	5	5	-	-	2

구 분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마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546목 기타재산이자수입	3	5	5	-	-	2
12관 경상이전수입	2	14	2	-	12	-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2	14	2	-	12	-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2	14	2	-	12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세출 결산

가. 총괄 내역

20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349억 7,400만원이고, 이 중 97.2%인 339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억 7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세출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34,974	-	34,974	33,996	978	97.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4년도 세출예산 프로그램은 ‘통일정책자문·건의 성과제고(1000)’와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1100)’로 구성되어 있음.

‘통일정책자문·건의 성과제고 프로그램(1000)’은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 조성(1031)’, 정보화사업(1033)’ 등 3개의 단위사업과 ‘자문회의 운영’, 정보화사업 추진’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 프로그램(1100)’은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31)’, ‘사무처 인건비(1101)’ 등 4개의 단위사업과 ‘자문위원 역량강화’, ‘지역협의회 운영’,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31) 사업에 203억 4,900만원이 집행되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 집행액(339억 9,600만원)의 59.9%를 차지하고 있음.

세부사업별로 보면, 자문회의 운영(1031-300) 사업 44억 8,800만원, 자문위원 역량강화(1131-300) 사업 25억 2,900만원, 지역협의회 운영(1131-301) 사업 121억 4,100만원, 지역협의회 활동추진(1131-302) 사업으로 56억 7,9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그 밖에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91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합 계	34,974	-	34,974	33,996	978	97.2%
통일정책자문·건의 성과제고(1000)	5,041	-	5,041	4,952	89	98.2%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1031)	4,530	-	4,530	4,488	42	99.1%
자문회의 운영(300)	4,530	-	4,530	4,488	42	99.1%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1032)	37	-	37	37	0	100.0%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304)	37	-	37	37	0	100.0%
정보화사업(1033)	474	-	474	427	47	90.1%
정보화사업 추진(500)	474	-	474	427	47	90.1%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1100)	29,933	-	29,933	29,044	889	97.0%
사무처 인건비(1101)	7,082	-	7,082	6,463	619	91.3%
인건비(100)	7,082	-	7,082	6,463	619	91.3%
기본경비(1111)	1,905	-	1,905	1,858	47	97.5%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200)	377	-	377	347	30	92.0%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총액인건비비대상 기본경비(250)	1,346	-	1,346	1,329	17	98.7%
전산운영 경비(251)	182	-	182	182	0	100.0%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31)	20,552	-	20,552	20,349	203	99.0%
자문위원 역량강화(300)	2,589	-	2,589	2,529	60	97.7%
지역협의회 운영(301)	12,265	-	12,265	12,141	124	99.0%
지역협의회 활동추진(302)	5,698	-	5,698	5,679	19	99.7%
시설관리(1132)	394	-	394	374	20	94.9%
청사관리 운영(303)	394	-	394	374	20	94.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최근 세출결산의 집행률 추이를 보면, 2020년 90.4%의 집행률에서 2021년 95.0%, 2022년도 96.9%로 증가했다가, 2023년에는 96.7%로 낮아졌지만, 2024년에는 97.2%로 회복했음.

< 최근 5년 세출 결산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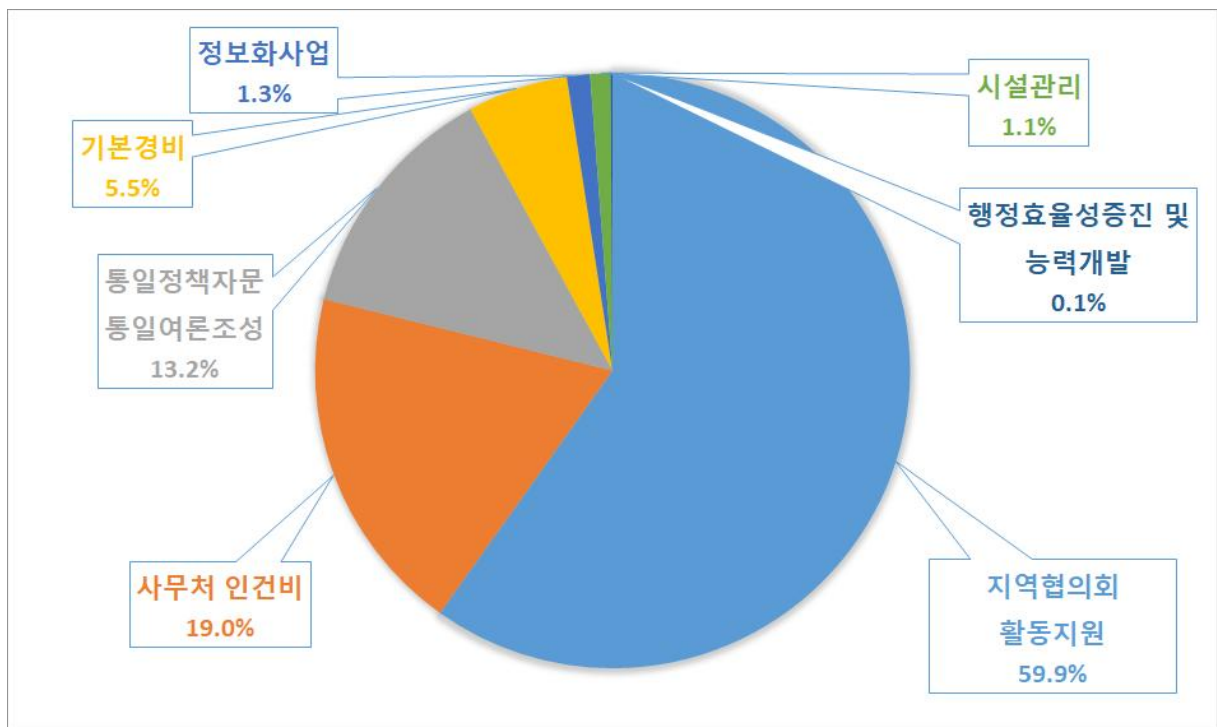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확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이용] (전용)	<세목조정> {내역변경}					
2020년	32,476	760	(±1,160)	<±546> {0}	32,819	29,683	-	3,136	90.4
2021년	32,918	-	(±134)	<±165> {±2}	32,918	31,262	-	1,656	95.0
2022년	34,025	-	(±76)	<±150> {±0}	33,728	32,686	-	1,042	96.9
2023년	34,033	-	(±120)	<±121> {±29}	34,033	32,907	-	1,126	96.7
2024년	34,974	-	(±6)	<±247> {±0}	34,974	33,996	-	978	97.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7개 단위사업의 집행액 비중을 보면,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59.9%(203억 4,900만원), 사무처 인건비 19%(64억 6,300만원),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사업 13.2%(44억 8,800만원), 기본경비 5.5%(18억 5,800만원), 정보화사업 1.3%(4억 2,700만원), 시설관리 1.1%(3억 7,400만원),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0.1%(3,700만원)임.

< 2024년도 단위사업별 집행액 비중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나. 이체·이용 및 이월 내역

2024년도 세출결산의 이체·이용 및 이월액은 없음.

다. 전용 내역

2024년도 세출결산의 전용액은 2023년도 1억 2,000만원 대비 1억 1,400만원 감소한 600만원임.

구체적인 내역으로 총액인건비 직급상향분 보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에서 ‘인건비’로 600만원을 전용하였음.

< 2024년도 세출예산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1111-200)	210-05	6	인건비 (1101-100)	110-01	총액인건비제 직급상향분 보수 부족분 충당
계		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 2024 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 주요 검토내용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¹⁾」을 마련하여 예산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위원 구성 시 위원 수를 과소(기준: 7인 이상→ 실제 운영: 5인 이상)하게 운영하고 있고, 외부 위원 선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심의사항도 통일부 등 다른 중앙관서와는 달리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예산 전용 시 예산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예산집행과 관련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산심의회가 재정집행 관련 내부통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향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내부통제 제도가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시성이 있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22년부터 사업수행방식을 보조금 교부에 의한 지역조직 수행방식(민간경상보조비 교부방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접수행 방식(위탁사업비 등 직접집행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예산심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 왔으나, 직접수행방식으로 전환된 사업의 실적이 감소하였는 바, 사업수행방식을 전환한 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별로 그 전환이 해당사업의 추진 체계 및 양적·질적 성과 등에 미친 영향 분석을 실시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당 사업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자문회의 운영 세부사업 중 국내·해외 지역회의 내역사업(28억 6,4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의 과소편성 및 과다집행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바,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거 집행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반복적인 예산 과소편성 및 과다집행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4) 자문회의 운영 세부사업 중 국내·해외 지역회의 내역사업(28억 6,4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해외지역회의 현장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물품 구입경비 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는 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자문회의 운영 세부사업 중 간부위원 활동지원 내역사업(2억 4,4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간부 자문위원의 활동경비가 직책수행경비(250-02)와 기타보전금(310-04)으로 나누어 집행되고 있는 바,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음.

(6) 자문위원 역량강화 세부사업 중 평화통일자료 지원 내역사업(3억 8,600만원 집행)과 관련하여 영상자료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

비목(210-01)과 일반용역비 비목(210-14)으로 혼용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영상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한 성격의 경비가 혼용 집행되지 아니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정비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Ⅱ.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별 검토

1. 세입

2024년도 세입예산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1,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2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과 동일함.

< 2024년도 세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예산액 대비 수납율
합 계	5	19	7	2	140.0
기타재산이자수입	3	5	5	2	166.7
기타경상이전수입	2	14	2	0	1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4년도 징수결정액 1,900만원의 세부 내역은 사무처 및 국고보조금 (운영비, 사업비) 통장 이자 500만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200만원, 과년도 소송비용액 미상환금 1,200만원임.

최근 5년간 연도별 세입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최근 5년 세입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 차액	예산액 대비 수납율
2020년	6	4	4	△2	66.7
2021년	6	27	15	9	250.0
2022년	5	24	12	7	240.0
2023년	5	32	20	15	400.0
2024년	5	19	7	2	14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최근 5년 세입발생 현황 >

(단위: 백만원)

연 도	과 목	금 액	세 부 내 역
2020년	기타재산수입	2	o 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통장 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2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계	4	
2021년	기타재산수입	3	o 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통장 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12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및 과오납 반납금, 퇴직급여 환급금
	기타잡수입	0.02	o 퇴직자 보유 공적항공마일리지 반납
	기타고정자산매각	0.2	o 배전반용 변압기 및 진공차단기 매각대금
	계	15	
2022년	기타재산이자수입	2	o 사무처 및 국조보조금 통장 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10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및 과오납 반납금
	계	12	
2023년	기타재산이자수입	2	o 사무처 및 국조보조금 통장 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18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및 과오납 반납금
	계	20	
2024년	기타재산이자수입	5	o 사무처 및 국조보조금 통장 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2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및 과오납 반납금
	계	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세출(총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내부통제기능 미흡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²⁾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 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는 등 재정집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2024년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예산집행심의회를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도록 하면서,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사항으로는 당해 중앙관서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기준 등³⁾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

2)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3) 이외에도 「2024년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사항으로 ①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④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⑤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⑥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⑦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⑧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⁴⁾」을 마련하여 예산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동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원 수를 과소(기준: 7인 이상→실제 운영: 5인 이상)하게 운영하였었고, 외부 위원 선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심의사항도 통일부 등 다른 중앙관서와는 달리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였었음(2024년 12월 31일 기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비교(2024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통일부
규정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통일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위원구성	위원장 1인과 5인의 위원 (전원 사무처 소속)	위원장 1인과 7인 이상의 위원(외부전문가 2인 이상 포함)
집행관련 심의사항	1.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의 주요 방침 2. 사업계획(계약, 설계 등을 포함한다)의 중대한 변경 3. 예산 전용, 내역변경 등 중요한 예산변경 4. 예산 집행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 5. 그 밖에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자체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 단기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 한 사항 3. 예비비, 예산의 이용, 하나의 사업에 5억 원 이상 전용으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 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예산변동 사항 4.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사항, ⑨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보조금 비리 신고포상금 포함),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⑩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⑪ 세입 징수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⑫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장기 미집행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취소 또는 보조금 반납 여부에 관한 사항 ⑬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나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통일부
		5.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7.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 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0.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예산심의회 회의 개최실적 측면을 살펴보면, 예산 전용 시 예산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예산집행과 관련된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산심의회가 재정집행 관련 내부통제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 2024년 예산심의회 회의 개최 실적 >

구분	일시	안건	결과(주요 내용)
예산 심의	2024년 5.17(금) 10:00	2025년 예산 요구안 적정성 (지출재구조화 및 재투자, 신규·중액 요구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	○ 심의결과: 2025년도 민주평통 예산안 344억 편성 ○ 심의결과 상세(단위 : 백만원) - (격년사업 증·감액) 해외 출범회의 △1,543,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 +61, 국내출범회의 +822, 자문위원 구성 +304 - (지출 재구조화) 평화통일 자료지원 △40, 해외 평화통일포럼 △150, 국내 정기회의 △31, 해외 특화사업 △125, 청소년 평화통일 공감사업 △393 - (중액요구 사업 순위) 국내 통일특화사업 2,800, 국내 출범회의 595, 간부위원 활동지원 655,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216
집행 심의	개최실적 없음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25.6.23.)⁵⁾하여 예산심의회에 외부위원을 포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훈령 제316호, 2025. 6. 23., 일부개정) 제2조(설치와 구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문건의국장
2. 위원지원국장
3. 운영지원담당관
4. 자문건의과장
5. 사업총괄과장

④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회 구성 시에는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명(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기사업계획 수립 방향
2. 단년도 예산 편성 방향
3. 사업별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과 사업 구조조정
4. 그 밖에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의 주요 방침

합하고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완료하였다고 설명함.

향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예산심의회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내부통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국가재정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제도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화하여야 할 것임.

-
2. 사업계획(계약, 설계 등을 포함한다)의 중대한 변경
 3. 예산 이월·이용·전용 등 중요한 예산변경
 4. 예산 집행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
 5. 일용직, 무기계약직 관련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절감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예산낭비사례 및 우수 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 절감 제안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
 9. 예산 성과급 등 소속직원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수행방식 전환 효과에 대한 성과 분석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국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비(320-01)로 편성 및 집행하고 있음.

이들 세부사업의 2024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자문위원 역량강화 세부사업은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협의회 운영 세부사업은 29억 6,3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세부사업은 47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46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 지역회의 등 민간경상보조비 편성 및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편성액	집행액	사업 시행장소	보조사업 수행주체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청년여성위 원역량지원 (해외)	216	215	해외	해외 지역회의 · 지역협의회
지역협의회 운영 (1131-301)	협의회 운영비	2,963	2,963	국내, 해외	국내 및 해외 지역회의 · 지역협의회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1131-302)	평화 통일포럼	169	166	국내, 해외	국내 및 해외 지역회의 · 지역협의회
	평화통일 시민교실	334	334	국내	국내 지역회의 · 지역협의회
	지역평화통 일활동 지원	3,087	3,109	국내, 해외	국내 및 해외 지역회의 · 지역협의회
	청소년 평화통일공 감사업	1,010	983	해외	해외 지역회의 · 지역협의회
	해외 평화통일정 책강연회	107	107	해외	해외 지역회의 · 지역협의회
	소계	4,707	4,699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그런데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⁶⁾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조직으로 국가기관에 해당함.

보조금의 정의, 예산의 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정의함.⁷⁾

이에 따라 2021년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조직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국회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적되었음.

<민간경상보조비 예산 편성에 관한 지적사항>

구분	지적사항	답변(조치사항)
국고보조금통합 시스템관리단 (기재부, 2021년)	국가기관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금 교부는 부적절	보조사업 중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22년, 자문위원 연수),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23년),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24년, 국내) 등을 단계적으로 직접집행 사업으로 전환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지적사항	답변(조치사항)
예결위 (국회, 2021년)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중 지역회의 기획사업비(민간경상보조)로 정책회의 성격의 운영위원회 개최비용을 집행한 것은 보조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중 정책회의 성격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24년부터 직접집행사업으로 전환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회 등의 지적사항 이행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22년 자문위원 역량강화(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2023년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및 2024년 자문위원 역량강화(청년·여성위원역량지원)의 사업수행방식을 보조금 교부에 의한 지역조직 수행방식(민간경상보조비 교부방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접수행 방식(위탁사업비 등 직접집행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왔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수행방식 전환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변경연도
		예산과목	금액	예산과목	금액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합계	1,000	합계	890	기재부 등 의견 반영	2022
		210-01	64	210-01	64		
		210-07	39	210-07	39		
		210-14	180	210-14	700		
		220-01	82	220-01	82		
		240-01	5	240-01	5		
		320-01	630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1131-302)	우리고장 평화플랜 (~2022)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2023~)	합계	127	합계	94	기재부 등 의견 반영	2023
		210-01	16	210-01	64		
		220-01	6	210-07	9		
		240-01	14	220-01	4		
		320-01	91	240-01	17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청년·여성위 원역량지원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합계	306	합계	180	기재부 등 의견 반영	2024
		210-01	12	210-01	22		
		210-07	3	210-07	5		
		220-01	32	210-14	120		
		240-01	1	220-01	32		
		320-01	258	240-01	1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청년·여성위 원역량지원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합계	306	합계	180	기재부 등 의견 반영	2024
		210-01	12	210-01	22		
		210-07	3	210-07	5		
		220-01	32	210-14	120		
		240-01	1	220-01	32		
		320-01	258	240-01	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조직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비로 교부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세부사업 기준으로 3개 세부사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사업효과성 부재 등의 사유로 3개 세부사업 모두에 대하여 감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진행상황('25. 5.26 기준) >

(단위: 백만원)

평가대상 세부사업 (사업코드)	보조사업 (내역사업)		예산	보조사업 평가단 평가의견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해외	186	<감축> - 지역협의회 활동에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
지역협의회 운영 (1131-301)	협의회 운영비	국내	1,672	<감축> - 사업 효과성 관련 내용이 부재하여 사업성과를 파악할 수 없음
		해외	1,699	
		소계	3,371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1131-302)	평화통일포럼	국내	79	<감축> - 5개의 내역사업별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중심으로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있어 사업효과 판단이 제한적
		해외	120	
		소계	199	
	평화통일시민교실		384	
	지역통일활동 지원	국내 정기회의	549	
		해외 정기회의	317	
		국내 특화사업	825	
		국내 청년여성	198	
		탈북민 공감	840	
		해외 특화사업	1,233	
		글로벌 특위	125	
		소계	4,087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617	
	해외 통일정책강연회		10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추가적 감축은 국가 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부적정성을 완화할 수 있고, 소요예산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직접수행방식으로 전환된 사업의 실적을 보면, 보조금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내역사업('22년 전환) 및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내역사업('23년 전환)의 사업수행 실적이 전환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청년·여성위원역량지원(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내역사업('24년 전환)은 전환 전 대비 약 15%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수행방식 전환 후 실적 변화 추이>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내역사업	변경 연도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실적	2024년 실적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지역통일 준비 역량강화	2022	권역별 연수 58회, 온라인 연수 4회 실시 694백만원 집행	권역별 연수 38회, 온라인 연수 5회 실시 527백만원 집행	지역회의별 연수 18회, 지역회의·협 의회 간사 연수 1회 실시 381백만원 집행	지역회의별 연수 17회, 지역회의·협 의회 간사 연수 1회 실시 366백만원 집행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1131-302)	우리고장 평화플랜 (~2022)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2023~)	2023	시민대화 6회 실시, 152백만원 집행	시민대화 6회 실시, 130백만원 집행	시민대화 3회 실시, 91백만원 집행	시민대화 3회 실시, 91백만원 집행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청년·여성위 원역량지원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2024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활동 20회 실시 360백만원 집행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활동 22회 실시 360백만원 집행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활동 16회 실시 414백만원 집행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활동(직접사 업) 12회 실시 253백만원 집행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청년·여성위 원역량지원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2024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활동 18회 실시 309백만원 집행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활동 26회 실시 274백만원 집행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활동 32회 실시 192백만원 집행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활동(직접사 업) 5회 실시, 104백만원 집행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업수행방식 전환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수행방식이 전환된 사업별로 그 성과 등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이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전환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와 같
은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사업수행방식을 전환한 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별로 그 전환이 해당사업의 추진체계 및 양적·질적 성과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분석을 실시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당 사업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세출(사업별)

가.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1000-1031 단위사업)

1) 개 요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문회의 운영’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단위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본예산과 동일한 45억 3,000만원이며, 이 중 99.1%인 44억 8,800만원이 집행되고 4,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 행 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 행 률
	본예산	추경						
□ 통일정책자문 ·통일여론조성	4,530	4,530	-	-	4,530	4,488	42	99.1
○ 자문회의 운영 (1031-300)	4,530	4,530	-	-	4,530	4,488	42	99.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세부사업별 검토

가) 자문회의 운영(1031-300 세부사업)

‘자문회의 운영’ 사업은 통일정책 건의를 위한 법정회의 개최와 통일여론 수렴을 위한 사업으로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국내·해외 지역회의’, ‘자문회의 구성’, ‘자문위원 일반지원’, ‘간부위원 활동지원’, ‘직능별정책회의’, ‘지역운영위원회’ 등 총 8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 45억 3,000만원 중 99.1%인 44억 8,800만원이 집행되고 4,2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자문회의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자문회의 운영	4,530	4,530	-	-	4,530	4,488	42	99.1
·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519	519	-	30	549	547	2	99.6
·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253	253	-	△19	234	230	4	98.3
· 국내·해외 지역회의	2,869	2,869	-	18	2,887	2,864	23	99.2
· 자문회의 구성	-	-	-	-	-	-	-	-
· 자문위원 일반지원	157	157	-	±1	157	156	1	99.4
· 간부위원 활동지원	250	250	-	-	250	244	6	97.6
· 직능별정책회의	182	182	-	△12	170	165	5	97.1
· 지역운영위원회	300	300	-	△17	283	282	1	99.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세부사업의 비목별 주요 집행내역은 운영비(210목) 16억 4,600만원, 여비(220목) 23억 1,800만원 등임.

< 2024년도 ‘자문회의 운영’ 사업 비목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목-세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	추경							
○ 자문회의 운영		4,530	4,530	-	-	-	4,530	4,488	-	42
110-04	일용임금	16	16	-	-	-	16	15	-	1
210	운영비	1,673	1,673	-	±11	-	1,673	1,646	-	27
220	여비	2,325	2,325	-	±23	-	2,325	2,318	-	7
240-01	사업추진비	225	225	-	-	-	225	225	-	-
250-02	직책수행경비	121	121	-	-	-	121	121	-	-
250-03	특정업무경비	14	14	-	-	-	14	14	-	-
310-04	기타보전금	129	129	-	-	-	129	123	-	6
320-09	고용부담금	2	2	-	-	-	2	1	-	1
430-01	자산취득비	25	25	-	-	-	25	25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관련 사업은 자문위원 임기 2년을 주기로 하여 출범하는 홀수년도에는 국내·해외 출범회의가, 출범회의 다음연도인 짝수년도에는 국내·해외 지역회의가 각각 개최됨.

최근 3년간 동 세부사업의 추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최근 3년간, 자문회의의 운영 사업 추진 현황 >

연 도	사업 추진 현황
2022년	○ 운영위원회 개최 : 3회 ○ 상임위원회 개최 : 1회 ○ 분과위원회 개최 : 40회 ○ 정책 건의 : 11회(분기별 정기건의 4회, 수시건의 7회) ○ 남북관계전문가토론회 : 3회 ○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 4회 ○ 통일문제여론조사 : 15회 ○ 국내지역회의 : 8,326명 참석(53%) ○ 해외지역회의 : 1,744명 참석(45.9%) ○ 직능별 정책회의 : 9회, 712명 참석 ○ 국내 지역운영위원회 : 52회, 965명 참석 ○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 20회, 205명 참석
2023년	○ 운영위원회 개최 : 4회 ○ 상임위원회 개최 : 1회 ○ 분과위원회 개최 : 38회 ○ 정책 건의 : 11회(분기별 정기건의 4회, 수시건의 7회) ○ 남북관계전문가토론회 : 3회 ○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 4회 ○ 통일문제여론조사 : 15회 ○ 국내출범회의 : 10,525명 참석(48.8%) ○ 해외출범회의 : 2,523명 참석(62.5%) ○ 자문위원 위촉 : 제21기 자문위원 21,984명 위촉 ○ 직능별 정책회의 : 7회, 653명 참석 ○ 국내 지역운영위원회 : 72회, 1,318명 참석 ○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 20회, 262명 참석
2024년	○ 운영위원회 개최 : 4회 ○ 상임위원회 개최 : 1회 ○ 분과위원회 개최 : 36회 ○ 정책 건의 : 12회(분기별 정기건의 4회, 수시건의 8회) ○ 남북관계전문가토론회 : 2회 ○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 4회 ○ 통일문제여론조사 : 6회 ○ 국내지역회의 : 8,713명 참석(49.5%) ○ 해외지역회의 : 2,566명 참석(63.1%) ○ 직능별 정책회의 : 6회, 485명 참석 ○ 국내 지역운영위원회 : 72회, 1,285명 참석 ○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 20회, 311명 참석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은 통일 관련 자문회의의 운영과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기 위한 법정회의를 개최하여 평화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자문·건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정위원회⁸⁾는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대통령)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및 10개 이내로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로 구성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정위원회 현황 >

기 구	구 성	기 능
상임위원회 (법 제18조)	500명 (부의장 25명, 분과위원장 10명, 직능대표 상임위원 463명, 간사 2명)	○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 의장이 명한 사항 ○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운영위원회 (법 제19조)	50명 (부의장 25명, 직능대표 운영위원 24명, 간사 1명)	○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 해촉 심사 ○ 기타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법 제18조제5항)	10개 이내 분과×50명 내외	○ 각 분야별 안건 심의 및 건의 ○ 분과별 통일정책 연구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상임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최한다.

⑤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상임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통일여론 수렴·분석

‘통일여론 수렴·분석’ 사업은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통일여론 수렴 및 대상·시기별 여론분석을 위한 사업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그 결과를 통일 관련 정책 자문 또는 건의 등에 활용하고 있음.

2024년도 동 내역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통일여론분석 보고서를 4회 발간하고, 통일문제 여론조사를 14회 실시하였으며,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2회 개최하였음.

< 2023년 및 2024년도 통일여론 수렴·분석 사업 추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집행실적			
	2023년		2024년	
	발간 등 횟수	집행액	발간 등 횟수	집행액
통일여론분석보고서 발간	4회 발간	89	4회 발간	90
통일문제 여론조사	15회 실시	105	14회 실시	104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3회 개최	41	2회 개최	3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4년도 통일문제 정기 여론조사의 기간 및 조사대상은 아래 표와 같음.

< 2024년도 통일문제 정기 여론조사 기간 및 조사대상 >

구 분 (대주제)	조사기간	조사대상
정기 1차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 방안)	3.22 ~ 3.24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3.22 ~ 3.28	·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3.22 ~ 3.28	· 제21기 자문위원 대상
정기 2차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도전과 극복방안)	6.7 ~ 6.9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6.7 ~ 6.13	·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6.7 ~ 6.13	· 제21기 자문위원 대상
정기 3차 (통일환경 급변에 따른 북한 변화 및 국론결집 방안)	9.20 ~ 9.22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9.20 ~ 9.26	·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9.20 ~ 9.26	· 제21기 자문위원 대상
정기 4차 (통일환경 변화를 고려한 통일·대북정책의 대내외적 구현 방안)	11.22 ~ 11.24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11.22 ~ 11.28	·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11.22 ~ 11.28	· 제21기 자문위원 대상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4년 정기조사 주제는 다음과 같음.

< 2024년도 통일여론조사 정기조사 주제 >

구분	통일여론조사 정기조사 주제	결과 활용
1분기	△북한 대남노선 전환, △새로운 통일비전, △통일의지 결집 추진과제, △북한이탈주민 친밀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중점사항, △통일관련 추이분석 등	「통일 여론·동향」 발간
2분기	△통일 미래상에서 중요한 것,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정책,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의 기대효과, △남북자·역류자 인지도, △통일관련 추이분석 등	「통일 여론·동향」 발간 2분기 정책건의 연계
3분기	△8·15 통일독트린 우선 추진방안,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변화, △통일교육프로그램 활성화 과제, △남북자·역류자 군군포로 문제, △통일관련 추이분석 등	「통일 여론·동향」 발간 3분기 정책건의 연계
4분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반영, △2025년 북한의 도발 강도, △2025년 남북관계 전망, △통일관련 추이분석 등	「통일 여론·동향」 발간 4분기 정책건의 연계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4년도 통일여론조사 정기조사 응답률 현황 >

구분	국민여론조사	전문가 여론조사	자문위원 여론조사
조사 개요	· 일반국민(전국 만19세 이상 1,000명) · 분기별 3일 · 전화면접조사 (가구전화 20%, 휴대전화 80%) · 고정문항 5개, 현안문항 5개 · 글로벌알앤씨 수행	·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 분기별 6~7일 · 이메일 조사 · 고정문항 5개, 현안문항 5개 · 전문가 대상 추가문항 2개 · 글로벌알앤씨 수행	· 해당기수 자문위원 대상 · 분기별 6~7일 ·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병행조사 · 고정문항 5개, 현안문항 5개 · 자체 온라인 조사
1분기	· 2024.3.22 ~ 3.24(3일) · 응답률 10.1% · 신뢰수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 2024.3.22 ~ 3.28(7일) · 100명 응답(응답률 66.7%)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7%p	· 2024.3.22 ~ 3.28(7일) · 11,273명 응답(응답률 51.9%)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0.6%p
2분기	· 2024.6.7. ~ 6.9.(3일) · 응답률 10.2% · 신뢰수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 2024.6.7. ~ 6.13.(7일) · 100명 응답(응답률 66.7%)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7%p	· 2024.6.7. ~ 6.13.(7일) · 11,116명 응답(응답률 51.5%)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0.7%p
3분기	· 2024.9.20. ~ 9.22.(3일) · 응답률 10.1% · 신뢰수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 2024.9.20. ~ 9.26.(7일) · 100명 응답(응답률 66.7%)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7%p	· 2024.9.20. ~ 9.26.(7일) · 11,560명 응답(응답률 53.9%)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0.6%p
4분기	· 2024.11.22. ~ 11.24.(3일) · 응답률 10.0% · 신뢰수준 95%,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 2024.11.22. ~ 11.28.(7일) · 100명 응답(응답률 66.7%)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7%p	· 2024.11.22. ~ 11.28.(7일) · 10,766명 응답(응답률 49.9%) ·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0.6%p

주: 국민여론조사 응답률은 전화조사 응답에 성공한 횟수에 대한 것임. 국민여론조사는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할당 추출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며, 대부분의 경우 1,000명 정도를 표본으로 함.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 국내·해외 지역회의

국내·해외 지역회의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⁹⁾에 따라 구성된 국내 17개 시·도, 이북5도 및 해외 5개 등 총 23개 지역회의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자문회의 출범연도에는 출범회의가 개최되고, 출범 다음 연도에는 각 지역별로 지역회의가 개최됨.¹⁰⁾

제21기 국내·해외 지역회의는 해당 지역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국내는 해당 지역별로 개최하고, 해외는 자문위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개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2024년도의 경우 국내 지역회의는 18개 지역회의별로 1회씩, 총 18회 개최하였으며, 해외 지역회의는 미주, 유라시아(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으로 나누어 총 2회 개최하였음.

< 2024년 국내 지역회의 개최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

지역회의	일 시	장 소	집행액	참석인원	참석률
서울	9.26.(목) 14:00	세종대(광개토관 컨벤션홀)	80	1,587	44.3
부산	10.11.(금) 14:00	부산시청(대강당)	17	487	53.9
대구	10.14.(월) 14:00	대구은행(제2본점 대강당)	18	456	56.6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10) 국내·해외 지역회의 조직 현황(2025. 6. 기준)

구 분	대 상	지 역	계
국내 지역회의	특별시, 특별자치시, 시·도· 특별자치도, 이북5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북5도	18
해외 지역회의	대륙별·국가별 협의회 설치 등 고려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중동·아프리카	5

지역회의	일 시	장 소	집행액	참석인원	참석률
인 천	10.22.(화) 14:00	인천시청(대회의실)	12	322	52.5
광 주	10.14.(월) 14:00	김대중컨벤션센터(컨벤션홀)	17	296	56.4
대 전	10.23.(수) 14:00	대전시청(대강당)	9	198	52.8
울 산	10.16.(수) 14:00	울산시티컨벤션(안다미로홀)	12	271	60.1
세 종	10.17.(목) 14:00	세종시청(대회의실)	3	55	41.7
경 기	10.11.(금) 13:30	일산킨텍스(그랜드볼룸)	68	1,137	43.5
강 원	10.7.(월) 13:30	횡성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15	419	50.6
충 북	9.27.(금) 13:00	한국가스안전공사(대강당)	12	320	51.4
충 남	9.30.(월) 14:00	예산군문예회관(공연장)	18	458	51.5
전 북	10.16.(수) 14:00	전북도청(공연장)	21	459	49.2
전 남	10.17.(목) 14:00	전남도청(김대중강당)	20	582	48.8
경 북	10.4.(금) 13:30	포항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24	697	53.5
경 남	10.7.(월) 14:00	경남도청(대강당)	21	628	48.9
제 주	10.10.(목) 14:00	제주도청(본청 대강당)	6	152	59.8
이북5도	10.11.(금) 14:00	이북5도청(평화강당)	8	189	58.9

< 2024년 해외 지역회의 개최 현황 >

(단위: 명, %)

지역회의	기간	참석인원	참석률
미주	9. 9.(월) ~ 9.12.(목)	1,116	60.4
유라시아	12. 2.(월) ~ 12. 5.(목)	1,450	65.3

□ 국내지역회의 임차료 반복적 과소편성 및 초과집행 부적정

국내·해외 지역회의 내역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28억 8,700만원이며, 이 중 28억 6,400만원이 집행되고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내·해외 지역회의 내역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내·해외 지역회의	2,869	2,869	0	18	2,887	2,864	23
- 일용임금(110-04)	7	7	0	0	7	7	0
- 일반수용비(210-01)	363	363	0	△3	360	360	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	5	0	△5	0	0	0
- 특근매식비(210-05)	1	1	0	△1	0	0	0
- 임차료(210-07)	146	146	0	9	155	155	0
- 일반용역비(210-14)	390	390	0	0	390	369	21
- 국내여비(220-01)	282	282	0	△30	252	252	0
- 국외업무여비(220-02)	1,658	1,658	0	48	1,706	1,705	1
- 사업추진비(240-01)	16	16	0	0	16	16	0
- 고용부담금(320-09)	1	1	0	0	1	0	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내·해외 지역회의 내역사업 중 임차료 비목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국내 지역회의의 경우 1,950만원을 편성한 후 7,67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편성액의 약 4배를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세부적으로는 서울 지역회의 임차료가 예산편성액(1,100만원) 대비 약 2.5배(2,720만원)를 집행하였고, 경기 등 17개 지역회의 임차료가 예산편성액(850만원) 대비 5.8배(4,950만원)를 집행하였음.

<2024년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편성		집행	
편성내역	금액	집행내역	금액
1) 회의장 및 시설 임차료	19.5	1) 회의장 및 시설 임차료	76.7
가) 서울	11	가) 서울	27.2
나) 서울외 17개 시도	8.5 (500,000원× 17개 시도)	나) 대구	2.2
		다) 광주	6.2
		라) 대전	1.5
		마) 울산	2.5
		바) 경기	30.8
		사) 충남	1.8
		아) 전북	4.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회의 참석인원, 일자,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 회의시설을 임차함에 따라 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초과하였다고 설명함.

< 2024년 국내 지역회의 개최 현황(임차료 발생 지역) >

(단위: 명)

구분	장소명	소유주체	참석위원수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	세종대 (민간)	1,587
대구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	대구은행 (민간)	456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광주관광공사 (공공)	296
대전	대전시청 대강당	대전시 (공공)	198
울산	울산시티컨벤션 안다미로홀	울산시티컨벤션(주) (민간)	271
경기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	(주)킨텍스 (공공)	1,137

구분	장소명	소유주체	참석위원수
충남	예산군문예회관 공연장	예산군 (공공)	458
전북	전북도청 공연장	전라북도 (공공)	45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그런데 서울 및 경기 지역회의의 경우 2020년 및 2022년에도 참석위원 규모¹¹⁾ 등을 고려하여 민간시설을 임차한 바 있었으며, 임차료 집행액이 최소 1,477만원에서 최대 3,177만원에 달한 바 있음.

< 2020년 및 2022년 서울·경기 지역회의 개최 현황 >

(단위: 명)

연도	구분	장소명	소유주체	임차료 집행액	참석위원수
2020년	서울	반얀트리 페스타홀	반얀트리 (민간)	-회의장: 13,280천원 -회의장비: 13,200천원 -합계: 26,480천원	1,780
	경기	안산 GD컨벤션	GD 컨벤션 (민간)	-회의장: 4,276천원 -회의장비: 10,498천원 -합계: 14,774천원	1,737
2022년	서울	KBS아레나	KBS비즈니스 (민간)	-회의장: 11,770천원 -회의장비: 20,000천원 -합계: 31,770천원	1,656
	경기	신안산대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안산대 (민간)	-회의장: 4,740천원 -회의장비: 19,000천원 -합계: 23,740	1,29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처럼 서울 및 경기 지역회의의 경우 최근 2회(2020년 및 2022년)에 걸쳐 임차료 집행사례가 누적되어 있었던 바, 이를 참고하여 2024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민간시설을 임차하는 경우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예산을 과소편성한 후 집행단계에서 변경집행

11) 2020년 국내지역회의 참석위원수 규모(서울·경기 제외)는 최소 61명에서 최대 856명이었고, 2022년 국내지역회의 참석위원수 규모(서울·경기 제외)는 최소 61명에서 최대 606명이었음.

을 통해 과다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2020년 및 2022년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2020년				2022년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내역	금액	집행내역	금액	편성내역	금액	집행내역	금액
1) 회의장 및 시설 임차료	19	1) 회의장 및 시설 임차료	165	1) 회의장 및 시설 임차료	19.5	1) 회의장 및 시설 임차료	79.7
가) 서울	11	가) 서울	26	가) 서울	11	가) 서울	31.7
나) 서울외 16개 시도	8 (500,000 원*16개 시도)	나) 부산	11	나) 서울외 17개 시도	8.5 (500,000 원*17개 시도)	나) 인천	5
		다) 대구	7			다) 광주	6
		라) 인천	13			라) 대전	1.5
		마) 광주	7			마) 경기	23.7
		바) 대전	8			바) 강원	3.4
		사) 울산	9			사) 충북	1.2
		아) 세종	5			아) 충남	1.2
		자) 경기	15			자) 전북	2
		차) 강원	7			차) 경북	4
		카) 충북	7	-	-	-	-
		타) 충남	9	-	-	-	-
		파) 전북	7	-	-	-	-
		하) 전남	7	-	-	-	-
		A) 경북	8	-	-	-	-
		B) 경남	8	-	-	-	-
		C) 제주	8	-	-	-	-
		D) 이북5도	3	-	-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가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거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합리적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반복적인 예산 과소편성 및 과다집행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당초 예산 미편성 물품 구입 최소화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해외지역회의 현장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 답례로 지급하기 위한 물품 구입경비로 5,000만원을 해외지역회의 사업 중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집행하였음.

< 지급품 구입 현황 >

구입목적	수량	단가 (원)	구매금액 (백만원)	지급대상
자문위원 지급품	1,230	40,640	50	해외 자문위원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해외지역회의 사업 중 일반수용비 2억 4,300만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인쇄비 5,900만원, 회의용품구입 및 제작비 2,500만원, 역할자 사례비 4,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을 뿐 자문위원 지급품 구입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 2024년 예산 편성 시 해외 지역회의의 사업 중 일반수용비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 해외지역회의 일반수용비(210-01) : 243			
1) 인쇄비	59	4) 사진인화비	11
가) 회의안내서	12	5) 회의용다과구입비	36
나) 회의자료	47	6) 현장시찰보험료	3
2) 회의용품구입 및 제작	25	7) 현장시찰물품구입비	31
가) 문구류및회의소모품	12	8) 회의용 음료 구입	31
나) 명찰및비표	4		
다) 현수막 및 안내 표지판	9		
3) 역할자사례	47		
가) 강연	8		
나) 통역	16		
다) 번역	2		
라) 문화공연	2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해외지역회의 현장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물품을 구매하였고, 소요 예산은 인쇄비, 현장시찰 보험료, 현장시찰 물품구입비 등의 절감액으로 충당하였다고 설명함.

< 해외지역회의 일반수용비 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편성		집행	
편성내역	금액	집행내역	금액
나. 해외지역회의	243	나. 해외지역회의	279
1)인쇄비	59	1)인쇄비	32
가)회의안내서	12	가)회의안내서	16
나)회의자료	47	나)회의자료	16
2)회의용품구입및제작	25	2)회의용품구입및제작	121
가)문구류및회의소모품	12	가)문구류및회의소모품	71
나)명찰 및 비표	4	나)명찰 및 비표	1
다)현수막 및 안내 표지판	9	다)기념품 제작	50
3)역할자사례	47	3)역할자사례	40
가)강연	8	가)강연	6
나)통역	16	나)통역	15
다)번역	2	다)번역	4
라)문화공연	20	라)기타	14
4)사진인화비	11	4)사진인화비	10
5)회의용다과구입비	36	5)회의용다과구입비	41
6)현장시찰보험료	3	6)현장시찰보험료	0
7)현장시찰물품구입비	31	7)현장시찰물품구입비	14
8)회의용 음료 구입	31	8)기타 수수료 등	2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¹²⁾」은 기념품 등 물품구매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을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급품 구매가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12)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예) 기념품, 상품권, 피복, 내구소비재, 소모품, 비품, 인쇄비, 연구용역비 등

있기에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임.

따라서 향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자문위원 · 간부위원 지원

‘자문위원 일반지원’과 ‘간부위원 활동지원’ 사업은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의 지역통일활동 지원과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자문위원 일반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억 5,700만원 중 99.4%인 1억 5,6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간부위원 활동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억 5,000만원 중 97.6%인 2억 4,400만원이 집행되고 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자문위원 · 간부위원 지원 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 행 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자문위원 일반지원 (3005)	157	157	-	±1	157	156	1	99.4
· 간부위원 활동지원 (3006)	250	250	-	-	250	244	6	97.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인 전체 자문위원 21,984명을, 간부위원은 수석부의장(1명)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간사(1명), 상임위원회 간사(2명), 국내·외부의장(24명), 분과위원장(9명), 분과위원회 간사(9명) 등 46명을 의미함.

수석부의장(1명)은 의장(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며, 기타 간부자문위원(45명)은 지역의 통일활동 및 정책건의 활동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각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¹³⁾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¹⁴⁾

< 간부자문위원별 활동경비 월별 지급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수석 부의장	운영위 간사	상임위 간사	부의장	분과위원장	분과위 간사
지급액	6,000	1,500	1,300	300	200	15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법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 ▶ 시행령 제5조제2항(수당과 여비 등)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간사, 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간사, 운영위원회의 간사, 지역회의의 지회장, 협의회의 회장·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드는 활동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4) 지역회의의 지회장, 협의회의 회장·지회장에 지급하는 직무관련 활동경비는 없음.

□ 간부 자문위원 활동지원비 예산과목 일치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사무처는 같은 법 제13조¹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¹⁶⁾에 근거하여 간부 자문위원 48명에게 활동경비를 지급하고 있음.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수석부의장(1명)¹⁷⁾, 상임위원회 간사(2명), 운영위원회 간사(1명)의 활동경비는 직책수행경비(250-02)로, 지역 부의장(24명), 분과위원장(10명), 분과위원회 간사(10명)의 활동경비는 기타보전금(310-04)으로 편성되는 등 직책수행경비와 기타보전금 비목으로 나누어 편성 및 집행하고 있음.

< 2024년도 간부 자문위원 활동지원예산 집행현황 >

(단위: 만원)

구 분	인원	총액	지급기준	비고(비목)
수석부의장	1명	7,200	600×1인×12개월	직책수행경비(250-02)
운영위원회 간사	1명	1,800	150×1인×12개월	"
상임위원회 간사	2명	3,120	130×2인×12개월	"
지역 부의장	24명	8,640	30×24인×12개월	기타보전금(310-04)
분과위원장	9명	2,160	20×9인×12개월	"
분과위원회 간사	9명	1,620	15×9인×12개월	"
계	48명	24,540		

주: 상임위원회에 10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제21기 자문회의의 분과위원회 수는 9개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5)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법」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16)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수당과 여비 등) ① (생략)

②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간사, 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간사, 운영위원회의 간사, 지역회의의 지회장, 협의회의 회장·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드는 활동 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7) 2018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됨에 따라 2019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로 조정됨.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직책수행경비(250-02)는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고, 기타보전금(310-04)은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⁸⁾

< 직책수행경비와 기타보전금 비교 >

구분	직무수행경비(250목)	보전금(310목)
적용대상	직책수행경비(250-02) <u>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u>	기타보전금(310-04)¹⁹⁾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 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2.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3. 법령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4.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지원금 6. <u>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u>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18)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41, p. 248.

19)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386.

직제(職制)란 일반적으로 직무와 직위에 대한 제도를 의미하는 바, 자문위원이 직제에 의한 공적인 직위를 가진 것이 아니고 ‘무보수 명예직의 민간인’ 신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석부의장 이하 모든 자문위원의 활동경비를 기타보전금으로 편성 및 집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임.

반면, 현재 기타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부의장, 분과위원장, 분과위원회 간사의 경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도 수석부의장 등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직책수행경비로 편성 및 집행하여야 일관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될 것임.

나.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1000-1032 단위사업)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은 변화관리 워크숍, 성과관리, 제안제도 등을 통해 발전적 조직문화 활성화 및 행정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3,700만원 모두 집행되었음. 세부 집행내역은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2회에 3,150만원, 제안제도 운영 150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 400만원 등임.

< 2024년도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
	본예산	추경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37	37	-	37	37	0	1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단위사업의 최근 4년간 추진 실적은 다음 표와 같음.

< 최근 4년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추진 실적 >

연 도	사업 추진 현황
2021년	○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2회 ○ 제안제도 운영: 2회 ○ 재정성과관리 운영: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1회)
2022년	○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1회 ○ 제안제도 운영: 1회 ○ 재정성과관리 운영: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1회)
2023년	○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2회 ○ 제안제도 운영: 1회 ○ 재정성과관리 운영: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1회)
2024년	○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2회 ○ 제안제도 운영: 1회 ○ 재정성과관리 운영: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1회)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다. 정보화사업 추진(1000-1033 단위사업)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와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 업무지원을 위한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4억 7,400만원 중 4억 2,7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4,7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정보화 사업 추진	474	474	-	474	427	47	90.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주요 집행내역은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1억 7,6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 800만원, 행정업무용 PC 백신 프로그램 및 기록관리 전용 백신 라이선스 구입에 1,300만원, 통합관리시스템 메신저 교체에 1,600만원, 대량메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1,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차액	사유
☐ 정보화 사업 추진		474	427	47	-
○ 행정업무용 PC 백신 프로그램 구입	자산취득비 (430-01목)	13	13	-	-
○ 통합관리시스템 메신저 교체	자산취득비 (430-01목)	16	16	-	-
○ 대량메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자산취득비 (430-01목)	15	14	1	집행잔액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차액	사유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리용역비 (210-15목)	200	176	24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210-15목)	230	208	2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라. 사무처 인건비(1100-1101 단위사업)

2024년도 ‘사무처 인건비’(1100-1101 단위사업) 예산액은 70억 8,200만원 이고, 총액인건비 직급상향분 보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600만원을 전용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70억 8,800만원으로, 이 중 91.3%인 64억 6,3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2,500만원은 불용됨.

< 2024년도 사무처 인건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확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이 용] (전용)	<세목조항> {내역변경}				
□ 인건비	7,082	7,082	6	-	7,088	6,463	625	91.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4년도 사무처 인건비 비목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목-세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인건비		7,082	7,082	-	6	-	7,088	6,463	-	625
110-01	보수	6,759	6,759	-	△4	-	6,755	6,139	-	616
110-02	기타직보수	270	270	-	10	-	280	280	-	-
110-05	연가보상비	53	53	-	-	-	53	44	-	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4년 12월 말 기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공무원 정원은 80명 이고, 현원은 77명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원·현원 현황 >

(2024.12.31. 기준)

구분	계	정무직 (차관)	고위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이하
정원	80	1	3	3	12	20	41
현원	77	1	3	3	12	22	3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는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1111-200-2002)의 특근매식비(210-05)에서 인건비 직급상향분(6급→5급, 1명) 급여 충당을 위해 600만원을 자체전용('24. 2.29.)한 바,

최근 4년간의 결산 내역을 보면, 기본경비에서 매년 600만원을 전용하여 직급상향분의 보수 부족분으로 충당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인건비(1101-100)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6,684	6,684	-	6	-	6,690	6,461	96.9	96.7	-	229
2022	6,796	6,786	-	6	-	6,792	6,270	92.4	92.3	-	522
2023	6,948	6,948	-	6	-	6,954	6,185	89.0	89.0	-	769
2024	7,082	7,082	-	6	-	7,088	6,463	91.3	91.3	-	62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의도적 절감²⁰⁾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을 자율항목에 속하는 인력증원 등에 전용할 수 있는 바,

사무처는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직급상향 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0) 의도적 절감: 시행기관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 절감한 재원을 말함.

마. 기본경비(1100-1111 단위사업)

‘기본경비’(1100-1111 단위사업)는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로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비대상 기본경비 및 전산운영 경비로 이루어져 있음.

2024년도 예산액은 19억 500만원이고, 총액인건비 직급상향분 충당을 위해 인건비(1101-100)로의 전용으로 6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18억 9,900만원이며, 이 중 97.5%인 18억 5,800만원이 집행되고 4,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기본경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 행 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기본경비	1,905	1,905	△6	1,899	1,858	41	97.5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1111-200)	377	377	△6	371	347	24	93.5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1111-250)	1,346	1,346	-	1,346	1,329	17	98.7
○ 전산운영경비 (1111-251)	182	182	-	182	182	-	1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바.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00-1131 단위사업)

1) 개 요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사업은 국내·해외 지역조직의 평화통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문위원 역량강화’, ‘지역협의회 운영’,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단위사업의 2024년도 본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05억 5,200만원이고, 이 중 99.0%인 203억 4,9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20,552	20,552	-	-	20,552	20,349	203	99.0
○ 자 문 위 원 역량강화 (1131-300)	2,589	2,589	-	△6	2,583	2,529	54	97.9
○ 지 역 협 의 회 운 영 (1131-301)	12,265	12,265	-	±10	12,265	12,141	124	99.0
○ 지 역 협 의 회 활동추진 (1131-302)	5,698	5,698	-	6	5,704	5,679	25	99.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세부사업별 검토

가) 자문위원 역량강화(1131-300 세부사업)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은 자문위원의 정책건의 역량과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지역평화통일준비 역량강화’, ‘유공자문위원 포상’, ‘기관지 제작’, ‘평화통일자료 지원’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현액은 25억 8,300만원이며, 이 중 97.9%인 25억 2,900만원이 집행되고 5,4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자문위원 역량 강화	2,589	2,589	△6	2,583	2,529	54	97.9
·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655	655	±1	655	650	5	99.2
· 지역평화통일준비 역량강화	727	727	△29	698	690	8	98.9
· 유공자문위원 포상	99	99	20	119	119	-	100
· 기관지 제작	692	692	12	704	684	20	97.2
· 평화통일자료 지원	416	416	△9	407	386	21	94.8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세부사업의 비목별 주요 집행내역은 운영비(210목) 19억 4,500만원, 민간경상보조(320-01) 2억 1,500만원 등임.

< 2024년도 자문위원 역량강화 비목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목·세목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	추경							
○ 자문위원역량강화	2,589	2,589	-	△6	-	2,583	2,529	-	54
110-03 상용임금	90	90	-	-	-	90	83	-	7
210 운영비	1,992	1,992	-	△6	-	1,986	1,945	-	41
220 여비	219	219	-	-	-	219	218	-	1
240-01 사업추진비	24	24	-	-	-	24	24	-	-
310-03 포상금	30	30	-	-	-	30	30	-	-
320-01 민간경상보조	216	216	-	-	-	216	215	-	1
320-09 고용부담금	18	18	-	-	-	18	14	-	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최근 3년간 동 세부사업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 >

연 도	사업추진 현황
2022년	○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 전국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 등 청년위원 활동 : 22회 - 전국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 등 여성위원 활동 : 26회 - 세계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 2회 - 해외지역 청년·여성위원 역량강화 활동 : 24회 ○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 온라인 통일콘텐츠(온라인 지식서비스) : 16건 -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 부의장·협의회장 워크숍 등 : 40회 ○ 유공자문위원 국민훈장 수여 : 45개 ○ 기관지 제작 - 평화+통일 발행 : 12회/각 23,000부 - 민주평통 블로그 운영 : 515개 콘텐츠 게재 및 뉴스레터 제작 24회 ○ 평화통일자료 지원 - 영상자료 제작 : 11편 - 소책자(12,000부) 제작 및 발송, 공무원 인건비 등

연 도	사업추진 현황
2023년	○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 여성운영위원회 등 여성위원 활동 : 32회 - 청년운영위원회 등 청년위원 활동 : 16회 - 세계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 2회 - 해외지역 청년·여성위원 역량강화 활동 : 18회 ○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 온라인 통일콘텐츠(온라인 지식서비스) : 16건 -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 부의장·협의회장 워크숍 등 : 20회 ○ 유공자문위원 국민훈장 수여 : 43개 ○ 기관지 제작 - 평화통일 발행 : 12회/각 23,000부 - 민주평통 블로그 운영 : 569개 콘텐츠 게재 및 뉴스레터 제작 24회 ○ 평화통일자료 지원 - 영상자료 제작 : 11편 - 리플릿(22,000부) 제작 및 발송, 공무원 인건비 등
2024년	○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 여성운영위원회 등 여성위원 활동 : 5회 - 청년운영위원회 등 청년위원 활동 : 12회 - 세계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 2회 - 해외지역 청년·여성위원 역량강화 활동 : 12회 ○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 온라인 통일콘텐츠(온라인 지식서비스) : 12건 -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 부의장·협의회장 워크숍 등 : 19회 ○ 유공자문위원 국민훈장 수여 : 45개 ○ 기관지 제작 - 평화통일 발행 : 6회/각 24,500부 - 민주평통 블로그 운영 : 545개 콘텐츠 게재 및 뉴스레터 제작 24회 ○ 평화통일자료 지원 - 영상자료 제작 : 27편 - 리플릿(10,000부) 제작 및 발송, 공무원 인건비 등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내역사업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은 미래 통일시대 준비의 중요한 축인 청년·여성위원의 통일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준비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은 6억 5,500만원, 예산현액은 6억 5,500만원이며 이 중 99.2%인 6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불용하였음.

< 2024년도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655	655	±1	655	650	5	99.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사업은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과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2024년도에는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사업 12회,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5회,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14회를 각각 실시하였음.

< 2024년도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실적 >

(단위: 회, 백만원)

사 업 명		개최 횟수	집행액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 청년운영위원회	2	8
	▪ 국내 청년분과위원장 워크숍	1	43
	▪ 청년위원 역량강화 기획사업	9	202
	계	12	253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 여성운영위원회	2	6
	▪ 국내 여성분과위원장 워크숍	1	55
	▪ 여성위원 역량강화 기획사업	2	43
	계	5	104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 해외 청년위원 컨퍼런스	1	131
	▪ 해외 여성위원 컨퍼런스	1	126
	▪ 해외 청년·여성 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	12	36
	계	14	29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집행액에는 사업비, 수용비, 여비 등 모두 포함)

(2) 지역평화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

내역사업 ‘지역평화통일준비 역량강화’는 지역통일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지역별·대상별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통일준비를 위한 실천과제 발굴과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온라인 통일 콘텐츠 제작 및 연수자료집 제작 등을 통해 자문위원 연수에 필요한 영상 및 교재를 직접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있음.

< 2024년도 지역평화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 주요 추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o 온라인 지식서비스 제작 12편	143	140	136
o 자문위원 연수 19회 (간부위원 2회, 국내 자문위원 17회)	513	513	511
o 연수자료집 제작	71	44	44
합계	727	697	69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연도별 온라인 지식서비스 예산집행 내역 및 2024년 조회실적은 아래 표와 같음.

< 연도별 온라인 지식서비스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180	180	180	180	139
집행	167	169	172	177	136
제작편수	18편	16편	16편	16편	12편
제작단가	9.3/편당	10.6/편당	10.8/편당	11.1/편당	11.2/편당
조회수	7,100/편당	7,568/편당	14,263/편당	29,931/편당	25,727/편당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4년 온라인 지식서비스 조회실적 >

(단위: 회)

연번	제 목	조회 수 (‘24.12.31기준)
1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 무엇이 필요할까 (제도적 지원 vs 본인 의지)	30,894
2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북한의 핵도발, 한국의 생존 전략은?	27,193
3	남북 더 이상 동족 관계 아니다?! 김정은의 의도는?	26,336
4	북한 경제·사회 실태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생각은?	24,984
5	‘지방발전 20*10정책’ 암울한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은?	24,902
6	북한여성의 삶, 북한이 강요한 슈퍼우먼이 가져온 사회변화는?	25,505
7	북한주민의 자유권 실태와 증진 방안은?	32,117
8	8.15 통일 독트린에 담긴 통일의 지향점은?	24,527
9	K-컬처 아프리카 대륙까지 상륙?! 세계에 부는 한류 바람과 통일공공외교 전략은?	22,968
10	김정은 시대, 북한 청년들의 의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25,197
11	식량위기를 불러온 재해성이상기후!! 북한의 대응책은?	22,981
12	트럼프행정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까?	21,121
총 조회수	308,72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 기관지 제작 및 평화통일자료 지원

내역사업 ‘기관지 제작’ 및 ‘평화통일자료 지원’은 자문위원에게 통일·대북 정책, 남북관계 현안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건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화통일 발간’, ‘블로그 제작 및 SNS 운영’, ‘영상자료 제작’, ‘기타 평화통일자료 지원’ 등으로 이루어짐.

< 2023·2024년도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및 통일자료 지원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추진 현황	2023년 집행액	2024년 집행액
기관지 제작	「평화통일」	o 발간횟수 : 6회 (격월) o 발간부수 : 매회 24,500부 (모바일 「평화통일」 병행) o 배 부 처 : 자문위원 및 유관기관· 관련 단체	542	442
	블로그	o 발행주기 : 상시 o 콘텐츠 수 : 월 30~40개 o 대국민 공개 서비스(네이버 블로그)	248	242
평화통일자료 지원		o 영상자료 제작 : 27편 o ‘21기 민주평통 안내서’ 소책자 제작 등 o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 서비스	217	38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영상제작비 예산과목 혼용(210-01 ↔ 210-14) 집행 부적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영상자료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 비목(210-01)과 일반용역비 비목(210-14)으로 혼용하여 집행하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영상제작서비스’ 등 2종의 경비는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집행하였고, ‘2024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종합영상 제작비’ 등 4종의 경비는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집행하였음.

< 2024년 비목별 영상제작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비목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건명	집행액
일반 용역비 (210-14)	1131	300	210	14	2024 평화통일 영상자료 제작 용역	198
	1131	302	210	14	2024년 국내 정기회의 영상제작 용역	31
	소계					229
일반 수용비 (210-01)	1131	302	210	01	2024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종합영상 제작비	7
	1031	300	210	01	제21기 미주지역회의 추가 영상 제작비	8
	1031	300	210	01	제21기 미주지역회의 자문위원 활동사진 영상 제작비	2
	1111	250	210	01	평화통일 홍보동영상 제작	7
	소계					2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홍보동영상 제작비(1111-250-210-01)의 경우, ‘2024 평화통일 영상자료 제작’ 용역사업(1131-300-210-14)의 과업이 기

존 계획보다 많이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 일반수용비로 영상제작비 집행 사유 >

(단위: 백만원)

건명	집행액	일반수용비 집행사유
2024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종합영상 제작비	7	예산서 상 영상 제작비가 편성되어 있고,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로 보아 일반수용비로 지출
제21기 미주지역회의 추가 영상 제작비	8	△대통령(의장) 임석에 따른 추가 영상제작 소요 발생, △회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참석 자문위원의 성취감을 제고하기 위해 부득이 추가 제작하였음.
제21기 미주지역회의 자문위원 활동사진 영상 제작비	2	
평화통일 홍보동영상 제작비	7	평화통일 홍보동영상 제작비(1111-250-210-01)의 경우, 예산서 상 영상 제작비가 편성되어 있고, '2024 평화통일 영상자료 제작' 용역사업(1131-300-210-14)의 과업이 기존 계획보다 많이 증가하여 부득이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
합계	2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그러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영상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일반용역비 관련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목번호	목	세목(내역)
210	운영비	210-14 일반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또한 ‘2024 평화통일 영상자료 제작’ 용역과 같이 당초 계약 물량보다 과업이 증가한 경우 이·전용 등 예산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일한 성격의 경비를 서로 다른 비목으로 집행할 경우 예산 집행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비목 구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예산집행방식은 적절하지 아니함.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불가피한 소규모의 긴급한 소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성격의 경비가 혼용 집행되지 아니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정비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나) 지역협의회 운영(1131-301 세부사업)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²¹⁾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회의²²⁾와 지역협의회²³⁾의 운영비와 국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행정실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의회 인건비’, ‘협의회 운영비’, ‘협의회 직무교육’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동 세부사업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본예산과 동일한 122억 6,500만원이고, 이 중 99.0%인 121억 4,1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2,4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 행 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 행 률 (%)
	본 예산	추경					
○ 지역협의회 운영	12,265	12,265	-	12,265	12,141	124	99.0
· 협의회 인건비	9,220	9,220	△7	9,213	9,090	123	98.7
· 협의회 운영비	2,967	2,967	1	2,968	2,967	1	100
· 협의회 직무교육	78	78	6	84	84	-	1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2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 2023년 12월 31일 기준 23개(국내 18개, 해외 5개)

23)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구성, 2023년 12월 31일 기준 273개(국내 228개, 해외 45개)

최근 3년간 동 세부사업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추진 현황 >

연 도	사업추진 현황
2022년	- o 협의회 직원 인건비 매월 지급 - o 협의회 운영비 지급(국내 연초 1회, 해외 분기별) - o 협의회 직원 직무교육 : 전국단위 개최(1회)
2023년	- o 협의회 직원 인건비 매월 지급 - o 협의회 운영비 지급(국내 연초 1회, 해외 분기별) - o 협의회 직원 직무교육 : 전국단위 개최(1회)
2024년	- o 협의회 직원 인건비 매월 지급 - o 협의회 운영비 지급(국내 연초 1회, 해외 분기별) - o 협의회 직원 직무교육 : 전국단위 개최(3월, 1회)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협의회 인건비·운영비

협의회 인건비는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²⁴⁾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024년도에 9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협의회 직무교육 부족분 충당을 위해 700만원을 감 조정한 예산현액 92억 1,300만원 중 98.6%인 90억 9,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2,300만원은 불용되었음.

24) 국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공무원 근로자(행정실장) 현황

(단위: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북 5도
247	26	17	10	11	6	6	1	6	32	19	12	16	15	23	23	20	3	1

< 2024년도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인건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설치기준	예산현액	집행액	지급기준	비 고
국내 지역회의 (18)	시·도·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9,213	9,090	매월 29일 행정실장 개인별 지급 (기본급, 수당 등)	매월 1인당 200여만원 실급여 지급
국내 지역협의회 (228)	시·군·구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협의회 운영비는 자문회의 지역조직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정기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에 29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해외 운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1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예산현액 29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지역회의 및 협의회 운영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지급기준
합 계	2,963	2,963	
국내 지역회의(18)	194	194	연 1,080만원(연 1회) × 18지역회의
국내 지역협의회(228)	1,477	1,477	연 648만원(연 1회) × 228협의회
해외 지역회의(5) · 지역협의회(45)	1,292	1,292	(지역회의)분기당 666만원 × 5지역 × 4분기 (협의회)분기당 644만원 × 45협의회 × 4분기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해외 송금수수료(400만원) 제외)

국내 18개 지역회의에는 ‘협의회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연 1회 평균 1,080만원)하고,

국내 228개 지역협의회에는 ‘자문위원 수’(60인 이하, 61~100인, 101~140인, 141~180인, 181인 이상)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연 1회 평균 648만원)함.

< 2024년 국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급 기준 >

(단위 : 천원)

구분	기본경비 (연, 정액)	관할 협의회 당 추가지급액(연)		지역회의 수	지급액
지역회의	6,440	320		18	194,400
지역협의회	6,190	자문위원수	추가 지급액(연)	협의회 수	지급액
		1 ~ 60인	0	123	761,370
		61 ~ 100인	430	53	350,860
		101 ~ 140인	610	30	204,000
		141 ~ 180인	919	10	71,090
		181인 이상	1,320	12	90,120
	소계			228	1,477,440
총 계					1,671,84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해외 5개 지역회의에는 기준(기본경비 130만원, 협의회당 5만원, 사무실 임차료 최대 100만원, 인건비 최대 150만원)에 따라 분기당 489~924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해외 45개 지역협의회에는 기준(기본경비 60만원, 국가 및 도시 등급에 따라 최대 30만원, 자문위원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 관할 지회당 40만원, 사무실 임차료 최대 100만원, 인건비 최대 150만원)에 따라 분기당 211~1,083만원을 차등 지급함.

< 2024년 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급 기준 >

(단위 : 천원)

구분	기본경비 (연,정액)	관할 협의회 당 추가지급액(연)			사무실 임차료*	실무인력 인건비 지원**			
지역 회의 (5개)	15,600	600			최대 12,000	최대 18,000			
	소 계(지급액)					138,480			
지역 협의회 (45개)	7,200	추가 지급액(연)			사무실 임차료	실무인력 인건비 지원			
		자문위원수	국가·도 시별	관할 지회수 당					
		1~49인 (1,200)	가등급 (3,600)	4,800	최대 12,000	최대 18,000			
		50~70인 (1,440)							
		70~100인 (1,680)	나등급 (3,000)						
		101~130인 (1,920)	다등급 (2,400)						
		131~150인 (2,160)	라등급 (1,800)						
		150인 이상 (2,400)							
		소 계(지급액)					1,153,200		
	총 계(지급액)						1,291,680		

*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240만원~1,200만원까지 차등 지원 / 실지급액의 최대 70%이내)

** 실무인력을 운영하는 경우(240만원~1,800만원까지 차등지원 / 실지급액의 최대 70%이내)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다) 지역협의회 활동추진(1131-302 세부사업)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되는 국내외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 단위의 통일활동 추진에 관한 사업으로,

‘평화통일포럼’, ‘평화통일 시민교실’, ‘지역평화통일활동 지원’, ‘청소년 평화통일공감 사업’,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등 6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동 세부사업의 2024년도 본예산은 56억 9,800만원, 예산현액은 57억 400만원 이고, 이 중 99.5%인 56억 7,900만원이 집행되고 2,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 행 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
	본 예산	추경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5,698	5,698	6	5,704	5,679	25	99.5
· 평화통일포럼	475	475	△6	469	463	6	98.7
· 평화통일 시민교실	344	344	-	344	344	-	100.0
· 지역평화통일활동 지원	3,555	3,555	44	3,599	3,580	19	99.5
·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1,030	1,030	△27	1,003	1,003	-	100.0
· 해외평화통일정책 강연회	200	200	△5	195	195	-	100.0
·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94	94	-	94	94	-	1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최근 3년간 동 세부사업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 추진 현황 >

연 도	사업추진 현황
2022년	○ 국내평화통일포럼 : 51회, 3,190명 참석 ○ 해외평화통일포럼 : 3회, 420명 참석 ○ 평화통일시민교실 : 152회, 9,216명 참석 ○ 국내 평화통일활동 지원 : 183회(강연회·토론회 70회, 통일문화행사 등 113회) ○ 국내 정기회의 : 4회(분기별), 33,786명 참석 ○ 해외 평화통일활동 지원 : 162회, 31,716명 참석 ○ 해외 정기회의 : 3회(1~3분기), 6,401명 참석 ○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 212회, 24,032명 참석(국내 161회, 20,985명, 해외 51회, 3,047명) ○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 14회(대면 12회, 비대면 2회) ○ 우리고장 평화플랜 : 6회, 594명 참석
2023년	○ 국내평화통일포럼 : 34회, 3,625명 참석 ○ 해외평화통일포럼 : 4회(해외포럼 3회·국제학술회의 1회), 1,174명 참석 ○ 평화통일시민교실 : 139회, 12,291명 참석 ○ 국내 평화통일활동 지원 : 122회(강연회·토론회 44회, 통일문화행사 등 78회) ○ 국내 정기회의 : 4회(분기별), 39,773명 참석 ○ 해외 평화통일활동 지원 : 165회, 39,508명 참석 ○ 해외 정기회의 : 3회, 5,898명 참석 ○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 229회, 58,950명 참석(국내 168회, 54,773명, 해외 61회, 4,177명) ○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 14회, 1,175명 참석 ○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 3회, 420명 참석
2024년	○ 국내 평화통일포럼 : 17회, 1,703명 참석, 86백만원 ○ 해외 평화통일포럼 : 4회(해외포럼 3회·국제학술회의 1회), 730명 참석 ○ 평화통일 시민교실 : 164회, 18,849명 참석 ○ 국내 지역평화통일활동 지원 : 200회(강연회·토론회 등 48회, 통일문화행사 등 48회, 공모전 등 15회, 견학·체험 등 44회, 청년·여성 등 45회), 236,448명 참석 ○ 국내 정기회의 : 4회(분기별 1회), 38,176명 참석 ○ 해외 지역평화통일활동 지원 : 205회, 41,851명 참석 ○ 해외 정기회의 : 3회, 6,430명 참석 ○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 255회, 61,397명 참석(국내 202회, 57,784명 / 해외 53회 3,613명) ○ 해외 평화통일정책강연회 : 16회, 1,643명 참석 ○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 3회, 386명 참석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평화통일포럼 사업 및 평화통일 시민교실 사업

내역사업 ‘평화통일포럼’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 및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포럼과 해외포럼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음.

2024년도 국내포럼은 총 17회 개최되어 1,703명이 참석하였고, 해외포럼은 총 4회(해외포럼 3회, 국제학술회의 1회) 개최되어 730명이 참석하였음.

< 최근 4년 국내·외 평화통일포럼 실시내역 >

(단위: 회, 명,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개최 횟수	45	5	51	3	34	4	17	4
참가자	2,458	901	3,190	420	3,625	1,174	1,703	730
예산액	179	186	203	187	180	386	89	386
집행액	209	138	188	208	181	404	86	37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내역사업 ‘평화통일 시민교실’은 통일·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기반 구축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 지역협의회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음.

동 내역사업은 통일·대북정책, 국민통합, 북한 사회·문화, 역사 등으로 강연 주제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총 164회 개최되어 18,849명이 참여하였고 3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 평화통일 시민교실 개최 실적 >

개최 횟수	참가인원	집행예산	비고
164	18,849명	344백만원	회당 사업비 210만원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최근 5년 평화통일 시민교실 개최 횟수 및 참가인원 >

연도	개최 횟수(회)	참가인원(명)
2020년	127	6,714
2021년	132	8,760
2022년	152	9,216
2023년	139	12,291
2024년	164	18,84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지역평화통일활동지원

내역사업 ‘지역평화통일활동지원’은 지역 단위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통일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지역 통일운동을 전개하여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35억 5,500만원에서 4,400만원이 조정 증액된 예산
현액 35억 9,900만원 중 35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불용
하였음.

< 지역평화통일활동지원 사업 예산 비교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집행액		2024년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액	집행내역	집행액
계			2,656		3,580
국내 정기회의		0.6×229개소 ×4분기 (자료집 : 22)	572	0.6×229개소 ×4분기 (자료집 : 61)	611
해외 정기회의		2.8×45개소 ×3회 (자료 번역비 등 : 18)	391	2.35×45개소 ×3회 (자료 번역비 등 : 18)	335
지역회의· 협의회 특화사업	국내	3.06×246개소 (여비 : 19)	772	4.54×246개소 (여비 : 20)	1,137
	해외	9.7×95개소	921	11.85×95개소 (용역비 등: 371)	1,49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내역사업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국가관·통일관 정립 및 통일의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통일골든벨’과 ‘찾아가는 통일퀴즈 원정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동 내역사업의 2024년도 예산 현액은 10억 300만원으로, 편성 대비 2,700만원 감액 조정되었으며, 10억 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최근 4년 청소년평화통일공감사업 추진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대상	예산액	집행액	참여현황(학생 수)	진행 방식
2021년	중·고등학생	1,000	999	○ 총 14,007명 - 통일골든벨: 14,007명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진행
2022년	중·고등학생	830	835	○ 총 17,114명 - 통일골든벨: 17,114명	온·오프라인 병행
2023년	중·고등학생	1,030	1,029	○ 총 50,016명 - 통일골든벨: 50,016명	온·오프라인 병행
2024년	중·고등학생	1,030	1,003	○ 총 61,397명 - 통일골든벨: 28,729명* - 통일퀴즈 원정대 32,588명(산구) * 국내의 경우 고교생 대상으로 진행	온·오프라인 병행 * 해외골든벨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온라인 참여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청소년 통일골든벨 진행 단계 및 2024년 참가 학생 수 현황 >

1 단계	지역협의회 예선대회 154개 지역협의회 (국내 111개, 해외 43개)	25,440명 국내·외 고등학생 (국내 21,978명 / 해외 3,462명)
	↓	↓
2 단계	국내지역대회 및 해외결선대회 18회 (국내 17회 / 해외 1회)	3,289명 예선대회 입상자 (국내 3,218명 / 해외 71명)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4)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내역사업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는 통일·대북정책, 통일준비에 대한 재외동포사회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총 16회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총 1,643명이 참석하였음.

동 내역사업의 2024년도 본예산액은 2억원, 예산현액은 편성 대비 500만원 감액 조정된 1억 9,500만원이고, 1억 9,5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 2024년도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추진 현황 >

(단위: 명)

권역	주관	일자	장소	주제	참석인원	사무처인원	방식
계(16)					1,643		
일본 (2)	일본서부	6.22.	오리엔탈 호텔	국제관계의 변화와 한일협력	80	2	대면
	일본지역회의	6.24.	한국중앙회관	국제관계의 변화와 한일협력	70	2	대면
중국 (2)	광저우	12.20.	광저우 건국호텔	한반도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	100	0	대면
	상하이	12.28.	상하이 길상호텔	최근 북한 동향과 '25년 정세 전망	100	0	대면
아시아·태평양 (2)	호주	7.29.	시드니 한인회관	격랑의 국제정세 속에 통일·인권문제 바로 알기	90	4	대면
	뉴질랜드	7.31.	The Wharf	격랑의 국제정세 속에 통일·인권문제 바로 알기	110	4	대면

권역	주관	일자	장소	주제	참석인원	사무처인원	방식
미주 (8)	남미서부	4.15.	협의회 사무실	북한인권 실상과 증진 방안	170	0	대면
	로스앤젤레스	6. 7.	가든스위트 호텔	최근 한반도 정세와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88	2	대면
	오렌지샌디에고	6. 8.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45	2	대면
	오렌지샌디에고	7.12.	가든스위트 호텔	북한인권 실상과 증진 방안	200	0	대면
	뉴욕	10.25.	DMOS Manor	북한 변화와 8.15 통일 독트린	80	5	대면
	필라델피아	10.27.	힐튼 호텔	북한 변화와 8.15 통일 독트린	120	5	대면
	워싱턴	11. 1.	한인 커뮤니티센터	북한 변화와 8.15 통일 독트린	100	7	대면
	밴쿠버	11.23.	쉐라톤 밴쿠버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인권	120	0	대면
유럽·중동·아프리카 (2)	중동(사우디)	6. 6.	마다림 호텔	2024 통일 환경의 변화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70	2	대면
	중동(이집트)	6. 8.	포시즌 카이로	2024 통일 환경의 변화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100	2	대면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5)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내역사업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는 평화통일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통일과제를 발굴하고 실천계획 도출을 위해 2021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9,4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으며, 실적은 국내 3개 지역에서 총 386명이 참석하였음.

< 2024년도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사업 개최 현황 >

(단위: 백만원)

지역	일자	장소	참석	집행액
경기 용인시	5.22.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114명	31
대전 대덕구	9.4.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107명	31
경남 김해시	11.26.	롯데호텔앤리조트김해 가야홀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165명	3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 시설관리(1100-1132 단위사업)

‘시설관리’ 사업은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호원, 미화원, 조리원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사관리 운영’ 단일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24년도 예산액 3억 9,400만원 중 3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4년도 청사관리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					
○ 청사관리 운영	394	394	-	394	374	20	94.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단위사업의 연도별 예산 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청사관리 직원의 경우 2018년도부터 직접 고용방식(무기계약 근로자)으로 전환하여 청소원 3명, 방호원 6명, 조리원 1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음.

< 연도별 시설관리 사업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331	333	366	383	39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Ⅲ.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1. 재정상태표²⁵⁾

< 재정상태표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기 2024(A)	전기 2023(B)	변동액 (C=A-B)	변동률 (C/B)
1. 자산합계	28,889	28,905	△16	△0.1
가. 유동자산	-	-	-	-
나. 일반유형자산	28,350	28,355	△5	0.0
다. 무형자산	539	550	△11	△2.0
라. 기타비유동자산	-	-	-	-
2. 부채합계	-	-	-	-
가. 유동부채	-	-	-	-
3. 순자산	28,889	28,905	△16	△0.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5)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②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가. 자 산²⁶⁾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산은 288억 8,903만원으로, 전년 대비 0.1%인 1,591만원이 감소하였음.

유동자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유형자산은 283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감소하였는데, 세부내역은 건물 8,800만원 감소, 구축물 1억 700만원 증가, 기계장치 1,900만원 증가, 집기비품 및 차량운반구 1,900만원 감소, 기타일반유형자산 2,400만원 감소임.

무형자산은 5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소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소프트웨어 및 기타 무형자산의 신규취득으로 1억 8,400만원이 증가하고, 감가상각으로 1억 9,500만원 감소하였음.

26)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부 채²⁷⁾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채로 집계된 금액은 없음.

다. 순자산²⁸⁾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순자산은 부채가 없으므로 자산
가액과 같은 288억 8,903만원으로, 전년 대비 0.1%인 1,591만원이 감소하였음.

27)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①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8)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③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④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2. 재정운영 분석²⁹⁾

< 재정운영표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기 2024(A)	전기 2023(B)	변동액 (C=A-B)	변동률 (C/B)
1. 프로그램순원가	35,085	34,132	953	2.8
2. 관리운영비	-	-	-	-
3. 비배분비용	-	-	-	-
4. 비배분수익	7	20	△13	△65.0
5. 재정운영순원가(1+2+3-4)	35,078	34,112	966	2.8
6. 비교환수익 등	-	-	-	-
7. 재정운영결과(5-6)	35,078	34,112	966	2.8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1.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와 같이 기관의 여러 정책이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2.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3.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④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빼서 표시한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가. 프로그램순원가 및 관리운영비³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프로그램순원가는 350억 8,52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인 9억 5,298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예산 집행의 증가가 프로그램순원가 증가의 주요 원인임.

프로그램순원가의 주요 증감 사례는 인건비(4억 1,800만원 증가), 복리후생비(5,000만원 감소), 인쇄비(4,500만원 감소), 세금과공과(5,900만원 감소), 지급임차료(4억 4천만원 감소), 여비교통비(12억 1,900만원 증가), 외주용역비(6억 5천만원 증가), 보조비(4억 6,900만원 감소) 및 기타 프로그램비용(2억 7,100만원 감소)임.

나. 비배분비용³¹⁾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비배분비용은 없음.

30)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지침)

(3)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함.
- 행정형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함.
- 사업형 회계는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함

(4) 관리운영비

- ☐ 관리운영비란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함.
- ☐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비를 말함.
- ☐ 관리운영비의 범위는 국가회계실체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행정형 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를 전액 관리운영비로 구분함
 - 사업형 회계(기업특별회계, 기금): 개별적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기업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동 실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 중 사업의 수행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구분함.

* 사업형 회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는 간접원가로 보아 해당 프로그램에 배부함.

3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② (생략)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2.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다. 비배분수익³²⁾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비배분수익은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0%인 1,300만원이 감소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지출금반납금이 1,800만원 감소하고, 잡이익이 500만원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00만원 감소하였음.

라.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³³⁾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는 동일하며 350억 7,784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인 9억 6,537만원이 증가하였음.

3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② (생략)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3.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33) 재정운영순원가는 해당 국가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뿐 아니라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낮은 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비용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전체 재정활동을 통해 소요된 원가를 나타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④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빼서 표시한다. 다만,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3. 순자산변동 분석³⁴⁾

< 순자산변동표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기 2024(A)	전기 2023(B)	변동액 (C=A-B)	변동률 (C/B)
1. 기초순자산	28,905	29,053	△148	△0.5
2. 재정운영결과	35,078	34,112	966	2.8
3. 재원의조달및이전	35,064	33,967	1,097	3.2
4. 조정항목	△2	△2	0	-
5. 기말순자산(1-2+3+4)	28,889	28,905	△16	△0.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가. 기초순자산³⁵⁾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초순자산은 289억 500만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대비 변동은 없음.

나. 재정운영결과³⁶⁾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재정운영결과는 350억 7,784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인 9억 6,53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재정운영표의 내용과 동일함.

3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순자산변동표)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35)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지침)

I. 기초순자산

1. 기초순자산의 정의 및 계정분류

(1) 기초순자산의 정의

기초순자산은 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 수정으로 인하여 기초순자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기에 보고한 금액을 “보고금액”으로 별도 표시하고, 회계정책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이 매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변경누적효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6) 재정운영표에서 산출한 재정운영결과는 순자산변동표의 구성에 포함됨.

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³⁷⁾

국고수입, 기타재원의 조달 및 국고이전지출 등으로 구성되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350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인 10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음.

라. 조정 항목³⁸⁾

2024회계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자산변동표상 조정 항목은 자산재평가가 상계되어 전년 대비 변동이 없음.

37)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지침)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행정형 회계의 비교환수익과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 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말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재원의 조달

- (가) 국고수입
- (나) 부담금수익
- (다) 제재금수익
- (라) 기타비교환수익
- (마) 무상이전수입
- (바) 채무면제이익
- (사) 기타재원조달

(2) 재원의 이전

- (가) 국고이전지출
- (나) 무상이전지출
- (다) 기타재원이전

38)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지침)

(조정 항목) 조정 항목은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이나, 수익 또는 비용거래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1) 납입자본의 증감
- (2) 투자증권평가손익
- (3) 파생상품평가손익
- (4) 자산재평가이익
- (5)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 순자산의 증감
- (6) 기타 순자산의 증감

IV.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

조치 결과	구분			소계
	주의	시정	제도개선	
조치 완료	2	—	—	2
조치 중	—	—	1	1
소 계	2	—	1	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건의 주의와 1건의 제도개선 요구를 받았고, 이에 대해 1건은 조치 중, 2건은 조치 완료된 것으로 국회에 보고하였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25.6.30)
(1) 분과위원회 회의참석률 저조 관련 대책 필요	○ [지적사항] 법정위원회 중 분과위원회 경우 자문위원 출석률이 최근 5년간 평균 65.8%, 2023년에 59.6%이고, 2023년 상반기에 일부 분과위원회(청년·교육 37%, 인권·국제협력 39.1%, 국민소통2 40.9%)는 회의체의 기본요건인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음 - 상임위원회와 함께 자문 기능의 중추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분과위원회 참석률 제고를 위해 △ 법정회의 참석의무 고지 강화, △ 분과위원회 운영·발전방향 수립, △분과위원회의 특별활동 등 위원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그 결과 2024년 분과위원회 평균 참석률이 2023년에 비해 4.5%p 증가하였음 - 23년 : 58.8%(1085/1846명) → 24년 : 63.3%(1192/1882명)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 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25.6.30)																									
	○ [시정요구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연례적 전용방지를 위한 비목별 적정예산 반영 필요	○ [지적사항] 동 세부사업에서 2020년부터 매년 여비 또는 사업추진비를 전용하여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부족분에 충당하고 있음 ※ 2023년 자문회의 운영 사업 내 전용 현황 <table><tr><th rowspan="2">구분 (날짜)</th><th colspan="2">~에서</th><th rowspan="2">금액 (백만원)</th><th colspan="2">~으로</th><th rowspan="2">이·전용등 사유</th></tr><tr><th>세부 사업명 (사업 코드)</th><th>목- 세목 코드</th><th>세부 사업명 (사업 코드)</th><th>목- 세목 코드</th></tr><tr><td>자체 전용 (23. 11.24.)</td><td>자문 회의 운영 (1031- 300)</td><td>220- 01 220- 02</td><td rowspan="2">104</td><td>자문 회의 운영 (1031- 300)</td><td>210- 01 210- 07</td><td>전체회의 일반 수 용 비 (86백 만원), 임차료 (18백만원) 부 족분 충당</td></tr><tr><td>자체 전용 (23. 12.20.)</td><td>자문 회의 운영 (1031- 300)</td><td>220- 02</td><td>10</td><td>자문 회의 운영 (1031- 300)</td><td>210- 01</td><td>상 임 위 원 회 개최 일반수용비 (10백만원) 부 족분 충당</td></tr></table> - 예산의 전용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특정 비목에 대한 연례적·반복적 전용을 지양해야 함 ○ [시정요구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각 비목별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변경집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구분 (날짜)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이·전용등 사유	세부 사업명 (사업 코드)	목- 세목 코드	세부 사업명 (사업 코드)	목- 세목 코드	자체 전용 (23. 11.24.)	자문 회의 운영 (1031- 300)	220- 01 220- 02	104	자문 회의 운영 (1031- 300)	210- 01 210- 07	전체회의 일반 수 용 비 (86백 만원), 임차료 (18백만원) 부 족분 충당	자체 전용 (23. 12.20.)	자문 회의 운영 (1031- 300)	220- 02	10	자문 회의 운영 (1031- 300)	210- 01	상 임 위 원 회 개최 일반수용비 (10백만원) 부 족분 충당	○ 철저한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전용을 지양하고 연간 소요에 맞는 예산을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 완료
구분 (날짜)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이·전용등 사유																						
	세부 사업명 (사업 코드)	목- 세목 코드		세부 사업명 (사업 코드)	목- 세목 코드																							
자체 전용 (23. 11.24.)	자문 회의 운영 (1031- 300)	220- 01 220- 02	104	자문 회의 운영 (1031- 300)	210- 01 210- 07	전체회의 일반 수 용 비 (86백 만원), 임차료 (18백만원) 부 족분 충당																						
자체 전용 (23. 12.20.)	자문 회의 운영 (1031- 300)	220- 02		10	자문 회의 운영 (1031- 300)	210- 01	상 임 위 원 회 개최 일반수용비 (10백만원) 부 족분 충당																					
(3) 국내 출범회의 참석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2023년 21기 국내 출범회의(11.28.)의 위원출석이 정족수에 미달(48.8%)한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과반수	○ 향후 △회의 일정 조기 확정, △적극적인 참석 안내 등을 통해 회의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 상황 (25.6.30)
	출석의 정상적인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회의 일정을 조기에 수립하고, 자문위원의 자발적인 참여 제고를 위한 관리조치 등 제도개선을 할 것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격년사업)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